

지능정보사회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

서 보 건**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각국의 대응
- III.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현행 법률체계와 한계
- IV.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입법의 역할과 기능
- V. 결론

I. 들어가며

오늘날 4차산업¹⁾ 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의 지능화, 자율화와 더불어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산업구조가 인간의 지적 능력 한계를 극복하는 지능정보기술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untact)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하여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 본 논문은 2020년 7월 22일 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을 거쳐 1960년대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자동화, 온라인화와 정보활용이 강조된 시대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의 각 국가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선도적 지위를 잡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정책과 논의를 진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²⁾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의한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능정보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운영(‘15.10~12., 3차례), ‘지능정보 산업발전전략’ 마련(‘16.3.),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출범(‘16.9.),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컨퍼런스’ 개최(‘16.12.)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정리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발표를 시작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안,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제출되어 논의를 하였고, 일정 부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³⁾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논의의 전개가 가능하겠으나, 정책적·입법적 차원의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입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각국의 대응

1.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변화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변화된 사회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기술이라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등은 지능정보기술이다. 정보기술은 인간의 정보 활용능력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음에 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은

2) 각국의 법제도적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는 장민선, “인공지능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8-10, 한국법제연구원, 2018.10.31.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김현경·김민호,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제15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7.8., 67-116, 50면 참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 추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켰고,⁴⁾ 결국, 인공지능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활용기술(Data Technology, DT), 사물인터넷기술(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 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은 인지·학습·추론 등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활동을 구현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며,⁵⁾ 나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다양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⁶⁾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의 발달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의 차원을 넘어,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언젠가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SF영화에서 보듯이 다양한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⁷⁾

당장 현재 인공지능·인지시스템·IoT·로보틱스·3D프린팅·나노기술·유전공학·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이 광범위하게 결합·융합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실시간 번역, 음성·안면인식, 자율로봇 활용 등 인간의 인식·판단·행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⁸⁾ 또한 지능화된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제어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물·시스템의 무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⁹⁾되기는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비대면 산업구조로의 개편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더욱 빨리 우리 주변에 이러한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 최근에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의료검진과 원격수술, 드론 배송, 자율주행차, 스마트 어드바이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지능형 로봇 등 이미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형 서비스와 제품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생활서비스와 비즈니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¹⁰⁾ 관련 법제도의 개정

4) 민회·김정연,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정보화정책』 제26권 제2호, 2019, 여름, 83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해당 기술의 첫 글자를 따서 보통 ICBM이라고 부르고 있음.

5)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69면.

6)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7.2., 76-77면.

7) 이 보고서에서는 킬러로봇, 자율살상무기와 같은 것도 언급되기도 한다. 장민선, 앞의 보고서, 31면.

8) 정준현·김민호,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법조』 통권 제723호, 법조협회, 2017.6., 113면.

9)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13면.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머지않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¹⁾

하지만,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은 분명하나, 이에 수반하여 결과적으로는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기계종속성 등으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¹²⁾

당장 비대면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매장에서 자동주문기계를 도입하여 인력을 감축하듯이,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데이터 오남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 발생 등이 나타날 것이며, 언제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SF영화에서 보듯이 다양한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¹³⁾

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000명의 실업자를 만든다는 말과 같이¹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증기기관을 능가하는 변화가 될 것이며, 1000명의 실업자는 아니라도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지는 몰라도 피해자 또는 차별 받는 자가 등장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인간의 삶의 증대라는 산업혁명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시민 등 모든 구성원이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 요구된다.

10)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13면.

11) 이정아, “지능화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디자인하라”,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NIA)」 제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3.31. 이 보고서를 인용한 정준현, 김민호, 앞의 논문, 108면 재인용: 이 글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State of Future)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하였고,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2029년쯤 컴퓨터가 인간 지성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정아, 앞의 보고서, 8면.

12) 김민호·이규정·김현경,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83면;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08면.

13) 이 보고서에서는 킬러로봇, 자율살상무기와 같은 것도 언급되기도 한다. 장민선, 앞의 연구보고서, 31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새로운 전자기기의 도입으로 기계문맹자들은 편리한 도구사용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당장 키오스크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주문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14)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16면.

2.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한 각국의 대처¹⁵⁾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인 “미래의 직업”(The Future of Jobs)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 지형변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¹⁶⁾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각국은 급속도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경제,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해 산업적 측면의 기술개발 활성화, 축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구축하기보다는 학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지원하고, 윤리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있다.¹⁷⁾

해외 주요국가의 지능정보기술의 동향을 보면, “선도 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와 연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 구글, 테슬라 등이 주도하고 있음.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물인터넷 분야,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알파고), 구글과 테슬라는 무인자동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Industry 4.0”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의한 수직·수평 통합(스마트 공장)으로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기술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금융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변화를 바라고 있고, 중국은 독일을 모방하여 중국판 “Industry 4.0”의 추진을 통해 2049년(건국 100년)까지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품질브랜드 구축, 제조업과 IT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 지능정보 분야 주요 제품·서비스를 보면, IBM 왓슨은 미 제퍼디쇼 퀴즈왕

15) 각국의 대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인 법제연의 보고서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발표논문인 관계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그대로 소개하도록 한다.

16)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15면. 다보스포럼 등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들 수 있음,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2018.9., 10면-11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적응순위는 45개국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함.

17) 장민선, 앞의 연구보고서, 요약문 중에서.

에 등극하였고, 구글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바둑대국에서 승리하였으며, 로스 인텔리전스 로스는 미국 대형로펌의 AI와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앤더슨암센터 왓슨은 암진단 정확도 96%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최초 시험면허를 획득하였으며, 페이스북은 자살을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1) 미국의 법정정책적 대응과 논의

오바마 정부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하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의 최우선순위로 천명하고, “미국 국민을 위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AI에 대한 연구 검토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5개의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2) 유럽연합의 법정정책적 대응과 논의

미국보다 앞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로봇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로봇 규제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였고, 의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에 근거하여 ‘로봇공학의 민사법 규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로봇 등 인공지능 발전으로 초래되는 손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전자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 2018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현재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임 또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같은 해 5월부터 발효되어 유럽 전역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발표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여 뒤늦게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

18) 자세한 내용은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5면 참조.

업육성을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3) 영국의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195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고 2016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입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7년 영국 상원에는 AI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영국에서의 인공지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최근에는 영국 정부에서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4) 일본의 법정책적 대응과 논의

정부 차원에서 총무성을 중심으로 AI네트워크화를 추진하면서 국내외의 동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국제적 논의를 위한 AI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제도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최근에는 AI의 이용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책임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¹⁹⁾

Ⅲ.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현행 법률체계와 한계

1.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

(1)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과정

2009.5.22. 전부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전신인 1995.8.4. 제정된 「정보

19) 일본의 경우, 매년 총무성에서 정보기술에 관한 종합백서를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백서 참조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

화촉진기본법」을 모태로 우리나라의 IT·정보화정책의 근간이 된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9~2000년)’, ‘제2차 Cyber Korea21(1999~2002년)’, ‘제3차 e-Korea Vision 2006(2002~2006년)’, ‘제3차 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2007년)’, ‘제3차 연동 u-Korea 기본계획(2006~2010년)’,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년)’,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년)’ 등이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법이다.²⁰⁾

2019.12.10. 일부개정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법률 제17344호로 2020.6.9. 전부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며 2020.12.1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몇몇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어 2021.6.10. 시행되게 된다.²¹⁾

그 외에도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률안은 원유철의원(의안번호 2004436)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일부개정한 형태로, 강효상의원(의안번호 2005749)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정세균 의원(의안번호 2006030)이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제정한 형태로 각각 발의하였고, 해당 법률안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7.9.21.)되기도 하였다.²²⁾

20)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5면.

201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정보화 추진체계의 통일화 측면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추진체계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융합법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기본법에 필수적인 추진체계를 개별법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융합법에 이관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기본법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해당 책임부처(미래부)의 IT정책추진 범위를 축소시킨 기형적 정책 추진체계 입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73면 참조.

21) 본 법안은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3.5.)에서 2018.2.14. 제안된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9.7.8. 제안된 정중섭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중섭안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보장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이유

이 법은 지능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바탕으로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²²⁾

22)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면.

23) 법률안의 개정문 중 개정이유.

(3)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주요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 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구축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조성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6장	보칙			제2절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7장	보칙	

<표>현행법과 개정안 편제 비교²⁴⁾

가. 이 법의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 등(안 제1장)

1)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정보화를 포함하여 지능정보화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지능정보사회 변화에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24)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면. 표양식을 차용하여 개정법률안에 맞게 대입한 것임. ()의 내용은 변재일의원 안에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추가된 내용임.

다. 공공·지역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안 제3장)

라.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안 제4장)

1) 각급 연구기관 및 학교 등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함(안 제20조).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21조 ~ 제33조).

마.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안 제5장)

1)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함(안 제34조 ~ 안 제41조).

2)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42조 ~ 안 제43조).

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안 제6장 제1절)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 ~ 제48조).

2)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제52조).

3)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56조).

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보장(안 제6장 제2절)

1) 정보처리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및 정보보호시스템 기준 고시를 마련함(안 제57조·제58조).

2)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0조).

3)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평온한 사생활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 설계 제도를 도입함(안 제61조).

4)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특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지능정보화에 관련된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리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지능정보화”에 대해서는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해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다. 또한 불평등의 문제인 “정보격차”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정의하여 지능정

보서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기타 지능정보화 관련법률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08.3.28.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최근 2020.2.4. 개정되어 2020.5.5.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6.12. 개정은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정의하였고,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인 로봇랜드를 두고 있다.

(2) 전자정부법

2001.7.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7.1.3. 전자정부법으로 일부개정하여, 2017.10.24. 일부개정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예 따라 일부 개정안이 2020.12.10.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핵심에 해당되는 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업무의 효율화와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근간으로 되어 있다.²⁵⁾

(3) 정보통신융합법

2013.8.13.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보통신 및 융합과 관련된 생태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보통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에 부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²⁶⁾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IT 간 또는 IT와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된 법이며,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추진체계, 인력양성, 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표준화, 품질인증,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벤처지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임시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전략 위원회를 두고 있다.²⁷⁾

25)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73면.

26)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5341), 2013.6.5.이 법률안 제출당시에 이미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7)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74면.

(4) 산업융합촉진법

2011.4.5.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계에서 융합 산업의 발전이 뒤쳐진 주된 원인 중하나로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의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바,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고자 제정되었다.²⁸⁾ 2018.10.16. 개정된 현행 법률은 제2조에서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융합 서비스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 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5) 기타 법률

우선, 2009년에 제정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²⁹⁾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28) 정부제출, “산업융합촉진법안” (의안번호: 1809488), 2010.9.30.

29) 정부제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1803712), 2009.2.4., 76면.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를 지정·조성 및 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품질인증, 유통활성화, 국가기관 계약 관련 제도(수요예보, 분리발주 등), 공제조합 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⁰⁾

3. 현재 입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

(1) 산재된 정책관련 추진체계

앞서 지능정보화관련 법률체계에서 일부분만 보았듯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화(「국가정보화 기본법」), 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융합(「정보통신융합법」)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들이 각각의 정책추진을 위해 개별법률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³¹⁾ 이렇게 다양한 지능정보화사회 관련 정책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 예를 들어 IT법제 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능정보화법제라는 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능정보화에 맞는 정책의 추진 한계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본법으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실현은 개별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법은 IT의 진흥 혹은 규제를 담고 있는 기술 중심적 법으로 정보통신 진흥, 정보통신 융합, 방송통신 융합 등 입법의 대부분이 IT 중심의 정책추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지능정보기술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지능정보기술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행정·경제·문화·산업 등 전 분야의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

30) 정부제출, 앞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77면.

31)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2면.

을 이끌어가는 사회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중심이 아닌, 인본에 기반 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³²⁾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문 서비스 직종의 대체는 기존의 산업화·자동화와 달리 고도의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단순·육체노동의 대체와 달리 과급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과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 요청도 있어 왔다.³³⁾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의 기술과 지능정보화의 기반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한 시책마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을 위한 노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보급지원은 그 동안 주장되어 온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큰 사회적 과급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한 문제해결의지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3)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 추진 기반

정부와 시장 간의 공공재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한 공공재 연계망을 초점으로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관계성 개념에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³⁴⁾ 기존의 지능정보사회와 관련된 입법추진의 경향은 기존의 IT에 치중되어 지능정보사회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고려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에만 경도된 입법에 불과하

32)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2면.

33)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3면.

34) 거버넌스의 개념은 21)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성에 덧붙여 시민사회를 관계성 개념에 포함하여 이들을 공공재의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데 참여시키고 자발적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국정운영방식이다.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9면.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및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고용, 복지, 분배, 기타 국가적 차원의 행정규제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어 왔다.³⁵⁾

이에 개정된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함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설계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개정된 법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중 변재일의원 안에서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지능정보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대통령령(「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법정 기관으로 격상하고 지능정보사회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³⁶⁾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그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IV.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입법의 역할과 기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능정보화기술과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변화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편리함이라는 혜택과 함께 정보불평등,

35)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4면.

36)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면 이하.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일자리 변화, 이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부의 지능정보기술과 지능 정보서비스 등을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 정부 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통법부로서의 역할만 할 것인지, 권력통제만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입법작용과 권력통제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의 주도자로서의 입법자

고전적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입법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주권적 의사를 입법이라는 법규범정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나,³⁷⁾ 오늘날 현대적인 다원화 사회에서 국가기능이 복잡하고 확대되어 가지만, 국회는 전문적 입법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적 기관에 불과한 통법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³⁸⁾ 이러한 전전통적인 의회의 국민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현대의회제도의 정립에서 퇴색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의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기능과 권력통제기능이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1) 정부간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정부부처합동으로 공표한 지능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정보통신융합법 상의 심의·의결 기구인 ‘정보통신 전

37) 의회라는 표현이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수렴하는 대의기관을 의미한다면, 입법부라는 표현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주권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418면.

38) 성낙인, 앞의 책, 419면.

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개편·운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간사로 하며, 개별 중앙행정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기는 하지만, 그 운영상 실질적으로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형식적 차원의 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명칭을 일부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부처 간 실질적 정책 조율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은 정보통신융합법의 취지에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³⁹⁾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개정된 지능정보화법에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융합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였다.⁴⁰⁾

이에 대해 국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그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융합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융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정보통신융합법상 전략위원회로는 이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지능정보사회 관련 기본적인 정책 방향, 정부부처가 추진

39)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7면.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국가정보화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불가피하게 다른 법률인 “정보통신융합법”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을 위한 위원회로서, 국가정보화, 정보통신융합 등 유사·연관 분야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추진체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면 참조.

할 거시적인 과제 선정, 정부정책과 관련된 민간부분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서 기존 국무총리소속의 전략위원회를 활용하기 보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¹⁾

(2)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지능정보사회의 정책추진기반은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단일부처의 소관을 뛰어넘는 것으로 관련 법률들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부처간 협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간 협의를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두고 있다. 덧붙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간 갈등 해소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행정부처 간, 민간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적 정책추진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파급력은 단순히 기술 및 서비스, 산업적 파급력을 능가하므로 기술 중심이 아닌,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적 기반의 추진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41) 새로운 추진체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부개정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능정보화 추진체계로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능정보화 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서 신설하는 것은 지능정보화정책과 추진체계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면.

것이다.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노력으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제5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작용을 염두 해 두고 본다면, 중점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며, 그 협의과정에서 충돌하는 경우 조정의 과정도 의미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지능정보화사회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기존 법률의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타당할지 모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의 경우라면 의회도 포함된 협력체의 구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2.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구성

중요한 국가, 사회제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률상 기본법을 설정하고 그 이하에서 관련 법률을 전개하는 것은 법체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성격과 내용은 용어 그대로 단지 법의 보호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는 비효율적인 법이며, 정치적 결정의 작용에 불과하여 사실적 효율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그 실효적인 구체적 내용은 각 개별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도 많다. 하지만, 기본법에 규정된 정책방향규정이나 원칙규정 등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기는 하나, 그 조항의 효력은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념을 확인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당해 법률의 정당화 및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규범적 내용을 제시하기도 한다.⁴³⁾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된 법률은

42) 정책기획은 정부 중심이더라도 반드시 인문사회학적차원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90면.

일반적인 기본법과는 달리 정의규정에서부터 학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 되어 온 많은 지능정보에 관련된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편입한 것이나, 내용상 지능 정보기술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촉진과 함께 등장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나름 체계적인 전개를 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이나 협력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기본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입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법의 구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3. 선도적 입법체계 구축

(1) 인공지능 시대 대비 현행 법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최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개정법률안과 로봇기본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그밖에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논의되는 등 현행 법적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법적 쟁점을 고려한 개별 법령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산업계나 학계 등 민간의 윤리기준 마련과 같은 자율적 규율의 발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24.5%)이 있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22.6%)이 뒤를 이었고, 인공지능의 법인격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법체계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13.2%가 나왔다는 연구결과를 밝힌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체계에 대한 정비의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

43) 김현경·김민호, 앞의 논문, 87면.

상되나,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입법체계의 선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2)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전자인격(e-Person)의 부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인격권을 창설할 필요성에 대한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넓게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으며, 앞선 의견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적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적 접근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윤리적 접근과 법제도 측면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81.8%)하고 있다. 전문가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 법적 쟁점 논의방법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및 종합적, 총괄적 역할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이 41.4로 가장 높았고, 민간에서 각 분야별로 자유롭게 논의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 순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입법부의 선도적 또는 보조적 역할로 진행된다면 보다 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주권적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지능정보화시대에 따른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할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접하므로 가능하게 된다. 지능정보화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를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융합된 초연결 사회로 확장시키며, 이는 네트워크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⁴⁴⁾ 하지만, 개인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화된 콘텐츠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무관심한 정보 혹은 반대 성향의 의견을 차단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어 사고하기보다는 자기 강화적 정보이용 행태를 보이기 쉽고⁴⁵⁾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현대인일수록 다른 반대의견을 찾기 보다는 노출된 정보에 익숙해지게 되고, 계속해서 유사한 관련된 정보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마이크로 타게팅(Micro-targeting)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 행태 및 생활습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좁은 범주의 유권자로 분리, 이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게 훈련된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⁴⁶⁾ 선거 캠페인에서 마이크로 타게팅은 유권자의 견해, 가치, 선호 혹은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목적⁴⁷⁾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봇(Political Bot)이 등장하기도 한다.⁴⁸⁾ 이것은 대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하여 온라인 링크 자원 연결, 심지어 농담까지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캠프의 별도 인력 없이 유권자들에게 관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주제를 게시하거나 해시태그를 업로드 하면 봇이 그것들을 분석해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지능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유권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할 뿐이며, 자신의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가능

44)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2면.

45)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6면.

46) 오바마 선거캠페인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승리한 이후 핵심적인 캠페인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7면 참조, 미국 선거 과정에서 주요 선거캠프는 마이크로 타게팅 기법으로 경쟁한다. 2004년 부시(George W. Bush)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570만 명 규모의 미시간 유권자들을 3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Sosnik, 2006, 37쪽), 오바마 캠페인은 11개나 되는 다른 버전의 후원금 모금 이메일 홍보방식을 내세웠다.

47)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7면.

48) 봇은 ‘로봇(Robot)’을 축약한 단어로 실체가 없는 로봇을 의미하며, 봇은 소셜 혹은 기기 네트워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8-89면.

49) 민회·김정연, 앞의 논문, 89면.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 봇을 활용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부채 위험을 겪던 경제 위기 시기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에게 자동화된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확산시켰고, 2012년 선거 시기롭니 캠페인은 대중의 인기를 부풀리기 위해 트위터에서 수 천 명의 팔로워를 매수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보다는 배제의 정치가 주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지능정보화사회에 따라 변화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의미나 선거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정부에서 주도할 수 없는 것이며, 의회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지능정보화사회의 현실은 우리에게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⁵⁰⁾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지능정보화사회는 불평등과 사생활 침해, 고용불안정이라는 불안요소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지위,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책임 배분, 프라이버시 등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는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법적 대응은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에서 구분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⁵¹⁾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 충분히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변화와 함께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사회변화와 제도간의 조화와 균연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도의 대응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⁵²⁾ 이는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의 주도적인

50) 정준현·김민호, 앞의 논문, 100면.

51) 장민선, 앞의 보고서, 93면.

52) 이원태 외 4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11., 231면. 책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 UBS의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지역적, 투자적 의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의 적응 수준 중 우리나라의 법적 수준에서 종합 62위를 기록하여 관련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역할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 2021.5.10. / 심사완료일 : 2021.5.28. / 게재확정일 : 2021.6.10.

[참고문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 이원태 외 4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 김민호 · 이규정 · 김현경,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김현경 · 김민호,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제15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7.
- 민희 · 김정연,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정보화정책」 제26권 제2호, 2019.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2018.
-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7.
- 이정아, “지능화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디자인하라”,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NIA)」 제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 장민선, “인공지능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8-10,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정부제출, “산업융합촉진법안” (의안번호: 1809488), 2010.
- _____,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1803712), 2009.
- 정준현 · 김민호,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법조」 통권 제723호, 법조협회, 2017.
-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5341), 2013.

[국문초록]

지능정보사회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

서 보 건*

오늘날 4차 산업의 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의 지능화, 자율화와 더불어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 한계를 극복하여 경제산업구조가 지능정보기술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한 비대면(untact)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통하여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을 넘어 정보통신기술 뿐만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의한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입법적 차원의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입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능정보화기술과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변화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편리함이라는 혜택과 함께 정보불평등,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일자리 변화, 이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존재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권력통제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능정보사회, 입법의 역할과 기능, 인공지능, 비대면산업구조, 4차 산업혁명

[Abstract]

The role and function of legislation in the Intelligence Society

SEO, Bo-Keon*

Today, with the advent of the revolution era of the fourth industry,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s led by intelligence technology by overcoming human intellectual limit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pace is accelerating further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he Corona crisis. In the end, beyo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ombined, leading to the transition 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in the U.S. and Europe are steadily preparing for a new era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the enactment of policies and laws to support them.

Korea is also enacting various laws to prepar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novative changes in paradigms caused by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erefore, we would like to focus on related research on what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along with what the role of legislation is in the sense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ponse to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y the activ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However, as predicted in our future through chang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advances rapidly, and changes in our current lives and future will be related

* Professor, Law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to our existence, along with the benefits of convenience to the sovereign people. Serious consideration will be needed on what the legislature's role is, whether it will emphasize power control or play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social change. In this sense, I want to consider the role and function of legislation.

The whole process will be able to move in a more advanced direction through the leading role of legislation, not just through the role of the Government.

Key words : the Intelligence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legislation, AI, untact industrial structure, Industry 4.0
